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무원 노조출범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전담기구설치, 지방행정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혁신관련기구개편, 가축방역체제의 강화, 국가기반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등 신규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조정 535 → 540(증5명)

. 집행기관 525 → 529(증4명)

. 의회사무과 10 →11(증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참고사항

○기구 정원 조정계획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535"을 "540"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25"를 "529"로 하며, 동조 제2호중 "10"을 "1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 : 525명 2. 의회사무과 : 10명	제2조(정원의 총수) 540 1..... 529 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